

아시아

중국 CHIN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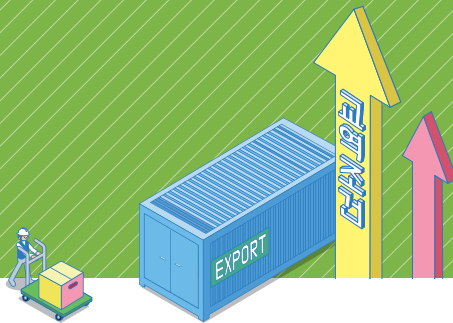
01. 시장현황 및 수입제도	051
02. 품목별 수출가능 현황	066
03. 비관세장벽 현황	070
04. 수출 애로사항	085
05. 현지화 자문보고서	088

2023년 한눈에 보이는
**국가별 농식품 수출
교역조건현황**



2023년 한눈에 보이는
중국 농식품 수출 교역조건 현황

[용어 정의]



비관세장벽

- 비관세장벽(Non Tariff Barriers, NTBs)은 관세를 제외한 모든 무역제한 조치를 총칭함
- 비관세장벽은 각 국가가 타국의 상품 생산자 및 수출자에게 규제 준수 및 비용 부담을 지우는 방식으로 WTO(세계무역기구, World Trade Organization) 및 FTA(자유무역협정, Free Trade Agreement) 체제 내에서 보호무역주의의 수단으로 활용됨

SPS(위생 및 식물위생 조치)

- SPS(Sanitary and Phytosanitary Measures)는 동식물의 해충 또는 질병, 식품 첨가물, 오염물질, 독소 또는 질병 유발 매체로 인해 발생하는 위험을 제한하기 위해 시행되는 조치임
- (예시) 육제품 생산 시 호르몬 및 항생제 사용 제한, 가공식품에 특정 첨가물 사용 제한 조치 등

TBT(기술 장벽)

- TBT(The Technical Barriers to Trade)는 각 국가가 지정한 자국의 기술 규정, 표준 및 적합성 평가 절차를 준수하는 것으로, 대표적으로 라벨링, 인증 요건 등이 있음. 일례로, 국내 식품 라벨링 규정과 수출대상국의 라벨링 규정이 상이할 경우 수출기업은 수출대상국의 라벨링 규정을 숙지하여 이를 준수해야 하므로 수출 장애 요소가 될 수 있음
- (예시) 미국 유아용 조제분유 라벨링 규정, 콜롬비아 가공식품 앞면 영양표시 의무 규정 시행, 나이지리아 트랜스지방 첨가요건 및 라벨 표시 강화 방안 식품 규제 발표 등

01

시장현황 및 수입제도 1)2)

1. 시장개요

시장규모

- 2022년 전체 식품 시장규모는 1조 3,069억 달러(한화 약 1,712조 390억 원)로 전년 대비 7.5% 증가함
 - 신선식품 시장 규모는 6,458억 달러(한화 약 845조 9,980억 원)로 전년 대비 7.5% 증가하였으며 전체 식품시장의 49.4%를 차지함
 - * 육류 시장규모가 2,488억 달러(한화 약 325조 9,280억 원)로 전체 시장의 19.1%를 차지하며, 신선식품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 가공식품 시장규모는 6,611억 달러(한화 약 866조 410억 원)로 전년 대비 7.5% 증가하였으며, 전체 식품시장의 50.6%를 차지함
 - * 베이커리 및 시리얼류 시장이 가장 높은 비중(17.7%)을 차지하며, 전년 대비 7.6% 증가함

식품 시장규모(2018~2022)

(단위 : 십억 달러,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중 (’22)	전년대비 증감률
전체	910.8	968.8	1,090.2	1,215.8	1,306.9	100.0	7.5
신선식품	462.9	488.4	542.8	600.9	645.8	49.4	7.5
- 육류	193.8	199.2	215.4	231.0	248.8	19.1	7.7
- 낙농품	95.2	102.3	116.4	129.8	141.3	10.9	8.9
- 채소류	93.4	100.4	112.2	129.7	136.9	10.5	5.6
- 과일 및 견과류	66.2	71.2	81.4	91.0	99.3	7.6	9.1
- 유제품	14.3	15.3	17.4	19.4	19.5	1.5	0.5
가공식품	447.9	480.4	547.4	614.9	661.1	50.6	7.5
- 베이커리 및 시리얼류	158.0	169.5	193.3	215.5	231.9	17.7	7.6
- 편의식품	82.1	89.0	102.5	115.5	126.5	9.7	9.5
- 스프레드 및 당류	83.6	89.1	101.7	113.8	121.1	9.3	6.4
- 스낵류	81.9	87.2	98.0	112.2	119.1	9.1	6.1
- 소스 및 향신료	25.9	27.8	31.7	35.3	38.3	2.9	8.5
- 영유아용 식품	12.5	13.3	14.9	16.7	17.5	1.3	4.8
- 펫푸드	3.9	4.5	5.3	5.9	6.7	0.5	13.6

* 출처 : STATISTA 자료 바탕으로 재가공(수산물 시장규모 제외)

1) 환율 : 1달러=1,310.00원(2024년 1월 4일, 매매기준율 기준)

2) '22년 기준 시장규모, 수출입현황 등의 통계자료(출처 : STATISTA, ITC Trade Map 등)

소비인구 및 특성

- 2022년 기준 전체 인구 수는 약 14억 3,300만 명으로, 전년 대비 유사한 수준임
 - 연령대별 인구 수는 균등한 편으로, 55세 이상 중장년층의 비중은 전체 인구의 약 32.9% 수준임
- 2022년 가구 수는 4억 8,700만 가구이며, 1인당 소비 지출 규모는 평균 4,970달러(한화 약 650만원) 규모로 전년 대비 1.24% 증가함
 - 2022년 1인당 평균 소비 지출 규모 중 식품에 대한 지출 규모는 약 18.5% 비중을 차지함
- 2022년 1인당 연간 식품 소비액은 897.7달러(한화 약 117만원)로 전년 대비 7.2% 증가했으며, 신선식품 소비액과 가공식품 소비액은 유사 수준임
 - 1인당 연간 신선식품 소비액은 443.6달러(한화 약 581만원)로, 전체 식품 부문 지출의 49.4%를 차지함
 - * 신선식품 중에서는 육류 170.9달러(한화 약 224만원)와 낙농품 97.1달러(한화 약 13만원)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 가공식품 소비액은 1인당 연간 454.1달러(한화 약 59만원) 규모로 식품 지출의 50.6% 차지함
 - * 베이커리 및 시리얼류 소비액 159.3달러(한화 약 21만원)로 가장 높은 비중을 보이며, 뒤이어 편의식품 86.9달러(한화 약 11만원), 스낵류 스프레드 및 당류 83.2달러(한화 약 10만원) 수준임

1인당 식품 소비액(2018~2022)

(단위 : 달러,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중 (^{'22})	전년대비 증감률
전체	634.8	672.1	753.6	837.3	897.7	100.0	7.2
신선식품	322.7	338.9	375.2	413.8	443.6	49.4	7.2
- 육류	135.1	138.2	148.9	159.1	170.9	19.1	7.4
- 낙농품	66.3	71.0	80.4	89.4	97.1	10.9	8.6
- 채소류	65.1	69.7	77.6	89.3	94.0	10.5	5.3
- 과일 및 견과류	46.2	49.4	56.3	62.7	68.2	7.6	8.8
- 유지류	10.0	10.6	12.0	13.3	13.4	1.5	0.8
가공식품	312.1	333.2	378.4	423.5	454.1	50.6	7.2
- 베이커리 및 시리얼류	110.1	117.6	133.6	148.4	159.3	17.7	7.3
- 편의식품	57.2	61.7	70.9	79.6	86.9	9.7	9.2
- 스프레드 및 당류	58.2	61.8	70.3	78.4	83.2	9.3	6.1
- 스낵류	57.1	60.5	67.8	77.3	81.8	9.1	5.8
- 소스 및 향신료	18.1	19.3	21.9	24.3	26.3	2.9	8.2
- 영유아용 식품	8.7	9.2	10.3	11.5	12.0	1.3	4.3
- 펫푸드	2.7	3.1	3.6	4.0	4.6	0.5	15.0

* 출처 : STATISTA 자료 바탕으로 재가공(수산물, 펫푸드 시장 규모 제외)

2. 수출입 현황

농식품 수출입규모

- 2022년 농식품 수출액은 전년 대비 17.4% 증가한 860억 3,475만 5,000달러(한화 약 112조 7,055억 원)로, 2018년 이후 연평균 6.8%의 증가세를 보임
 - 주요 수출국은 홍콩(11.8%), 미국(10.3%), 일본(10.2%)이며, 對미국 수출액은 전년 대비 39.5% 증가함
 - 對한국 수출액은 48억 5,935만 5,000달러(한화 약 6조 3,658억 원)로 전년 대비 21.8% 증가하였으며, 수출 비중은 5.6%를 차지함

국가별 농식품 수출현황(2018~2022)

(단위 : 천 달러,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중 (‘22)	증감률	
							전년비 (21/22)	연평균 (18~22)
전체	66,012,491	66,066,013	65,309,212	73,287,109	86,034,755	100.0	17.4	6.8
1 홍콩	9,042,442	8,609,283	7,876,315	9,382,647	10,152,108	11.8	8.2	2.9
2 미국	6,565,836	5,132,717	5,395,786	6,368,753	8,886,331	10.3	39.5	7.9
3 일본	8,629,301	8,310,449	7,912,263	8,525,369	8,750,019	10.2	2.6	0.3
4 베트남	5,120,113	5,188,629	5,202,868	5,101,269	5,248,426	6.1	2.9	0.6
5 말레이시아	2,185,192	2,757,049	3,261,113	3,956,726	5,122,444	6.0	29.5	23.7
6 한국	3,702,100	3,559,827	3,568,084	3,988,527	4,859,355	5.6	21.8	7.0
7 태국	2,728,066	3,040,829	3,377,995	4,052,590	4,303,573	5.0	6.2	12.1
8 네덜란드	1,447,185	1,505,317	1,660,084	2,093,406	2,847,418	3.3	36	18.4
9 인도네시아	2,199,825	2,506,206	2,258,684	2,386,494	2,628,550	3.1	10.1	4.6
10 러시아	1,797,471	1,655,202	1,277,441	1,459,658	2,198,516	2.6	50.6	5.2

* 출처 : ITC Trademap(www.trademap.org)

- 수출 상위품목은 조제식료품(3.3%) 동·식물성 유지(2.6%), 소스 기타(2.4%), 냉장 마늘(2.1%), 식물성 추출물 기타(2.0%) 순으로 나타남
 - 조제식료품의 수출액은 전년 대비 22.0% 증가한 28억 6,235만 달러(한화 약 3조 7,497억 원)로 가장 높은 비중 차지함
 - 뒤이어 동·식물성 유지 22억 776만 6,000달러(한화 약 2조 8,922억 원)로 전년 대비 69.2% 증가, 소스 기타 품목의 수출액이 20억 7,801만 6,000달러(한화 약 2조 7,222억 원)으로 집계되며 전년 대비 11.3% 증가함

품목별 농식품 수출현황(2018~2022)

(단위 : 천 달러,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중 (22)	증감률	
							전년비 (21/22)	연평균 (18~22)
전체	66,012,491	66,066,013	65,309,212	73,287,109	86,034,755	100	17.4	6.8
1 조제식료품	1,533,543	1,769,265	1,962,399	2,346,525	2,862,350	3.3	22.0	16.9
2 동·식물성 유지	394,842	521,056	751,875	1,304,893	2,207,766	2.6	69.2	53.8
3 소스 기타	1,039,210	1,121,916	1,393,985	1,866,749	2,078,016	2.4	11.3	18.9
4 냉장 마늘	1,411,251	1,991,142	2,063,351	2,033,585	1,796,197	2.1	-11.7	6.2
5 식물성 추출물 기타	912,310	954,981	1,039,559	1,403,907	1,724,203	2.0	22.8	17.2
6 조제·보존 채소 기타	1,551,969	1,510,769	1,379,359	1,570,257	1,697,241	2.0	8.1	2.3
7 설당 과자 기타	823,145	910,610	802,979	990,911	1,299,043	1.5	31.1	12.1
8 조제·보존 버섯 기타	375,675	629,573	658,786	747,820	1,242,217	1.4	66.1	34.8
9 닭고기 조제품	1,111,322	1,069,627	913,826	1,069,145	1,236,929	1.2	-27.2	-5.4
10 신선 사과	1,298,891	1,246,333	1,449,615	1,429,582	1,040,204	1.2	3.4	1.0

* 주 : HS CODE 6단위를 기준으로 함

* 출처 : ITC Trademap(www.trademap.org)

- 2022년 농식품 수입액은 2,172억 7,412만 3,000달러(한화 약 284조 6,291억 원)로 전년 대비 5.5% 증가하였으며, 연평균 증가율은 14.8%로 나타남

- 주요 수입국은 브라질(24.1%), 미국(18.8%), 태국(5.6%) 등임

* 브라질산 농식품 수입액은 523억 9,768만 6,000달러(한화 약 68조 6,410억 원)로 전년 대비 15.8% 증가하였으며, 미국산 농식품의 수입액은 409억 2,423만 1,000달러(한화 약 53조 6,107억 원)로 전년 대비 7.5% 증가함

* 태국산 농식품 수입액은 122억 1,170만 1,000달러(한화 약 15조 9,973억 원)로 전년 대비 6.0% 증가하였으며, 최근 5개년 연평균 성장률은 22.3%에 달함

국가별 농식품 수입현황(2018~2022)

(단위 : 천 달러,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중 ('22)	증감률	
							전년비 ('21/ '22)	연평균 ('18~ '22)
전체	125,118,131	134,476,131	158,506,834	206,021,971	217,274,123	100.0	5.5	14.8
1 브라질	33,008,798	29,447,643	35,240,926	45,240,101	52,397,686	24.1	15.8	12.2
2 미국	14,958,633	13,221,615	22,965,983	38,077,136	40,924,231	18.8	7.5	28.6
3 태국	5,462,468	6,555,270	7,477,992	11,516,621	12,211,701	5.6	6.0	22.3
4 뉴질랜드	6,712,696	8,410,591	8,546,216	10,848,275	11,352,607	5.2	4.6	14.0
5 호주	9,811,174	10,422,516	8,977,106	9,154,148	11,109,283	5.1	21.4	3.2
6 인도네시아	4,613,706	5,190,430	5,124,443	8,682,169	9,589,415	4.4	10.4	20.1
7 아르헨티나	1,907,813	6,199,301	5,980,200	6,334,812	7,500,877	3.5	18.4	40.8
8 캐나다	6,937,335	6,108,254	6,399,976	7,659,152	6,387,616	2.9	-16.6	-2.0
9 프랑스	4,218,168	4,413,503	4,995,409	6,855,921	5,450,560	2.5	-20.5	6.6
10 칠레	2,605,992	3,003,018	3,547,635	3,780,632	4,676,714	2.2	23.7	15.7
23 한국	945,982	1,036,619	1,079,773	1,297,856	1,272,160	0.6	-2.0	7.7

* 출처 : ITC Trademap(www.trademap.org)

- 주요 수입 품목으로는 대두 기타(28.2%), 냉동 쇠고기(7.2%), 옥수수(종자용, 사료용, 펠콘용 외)(3.3%), 팜유 기타(2.7%) 등이 있음
 - 대두 기타 품목의 수입액은 전년 대비 14.4% 증가한 612억 3,598만 8,000달러(한화 약 80조 2,191억 원)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함
 - 냉동 소고기의 수입액이 155억 9,370만 3,000달러(한화 약 20조 4,278억 원)로 전년 대비 46.7% 증가한 반면, 옥수수의 수입액은 전년 대비 11.5% 감소한 70억 9,884만 4,000달러(한화 약 9조 2,995억 원)로 집계됨

품목별 농식품 수입현황(2018~2022)

(단위 : 천 달러,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중 (22)	증감률	
							전년비 (21/22)	연평균 (18~22)
전체	125,118,131	134,476,131	158,506,834	206,021,971	217,274,123	100.0	5.5	14.8
1 대두 기타	38,077,974	35,342,019	39,545,567	53,528,180	61,235,988	28.2	14.4	12.6
2 냉동 쇠고기	4,240,397	7,192,463	9,003,220	10,630,155	15,593,703	7.2	46.7	38.5
3 옥수수	782,129	1,056,442	2,477,666	8,019,585	7,098,844	3.3	-11.5	73.6
4 팜유 기타	3,392,760	4,082,862	4,114,489	5,945,918	5,839,443	2.7	-1.8	14.5
5 조제식료품	2,717,012	3,122,560	3,835,344	4,070,764	4,700,789	2.2	15.5	14.7
6 영유아 조제식료품	4,888,489	5,330,701	5,218,026	4,453,193	4,544,292	2.1	2.0	-1.8
7 절단한 냉동 닭고기	1,133,551	1,967,277	3,428,706	3,459,472	4,097,349	1.9	18.4	37.9
8 두리안	1,095,122	1,604,484	2,305,027	4,205,405	4,034,867	1.9	-4.1	38.5
9 수수 기타	857,319	192,294	1,156,070	3,027,993	3,742,907	1.7	23.6	44.5
10 무첨가 우유· 크림	1,746,636	2,176,034	2,224,026	3,178,918	3,061,085	1.4	-3.7	15.1

* 주 : HS CODE 6단위를 기준으로 함

* 출처 : ITC Trademap(www.trademap.org)

한국의 對중국 농식품 수출현황

- 2022년 한국산 농림축산식품 對중국 수출액 12억 9,548만 5,000달러(한화 약 1조 6,971억 원)로 전년 대비 3.3% 감소함

- 농산물 수출액이 85.4%로 가장 큰 비중 차지, 뒤이어 축산물 8.4%, 임산물 6.2% 순임

* 농산물 수출액은 전년 대비 3.8% 감소한 11억 660만 4,000달러(한화 약 1조 4,497억 원)로 2018년부터 5년간 연평균 성장률 7.7%로 증가세임

* 축산물 수출액 1억 898만 9,000달러(한화 약 1,428억 원)로 전년 대비 13.6% 감소하였으며, 임산물 수출액은 최근 5년간 증감을 반복하는 양상으로 2022년 수출액은 전년 대비 27.5% 증가한 7,989만 2,000달러(한화 약 1,047억 원)로 집계됨

한국의 對중국 수출 규모(2018~2022)

(단위 : 천 달러,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중 ('22)	증감률	
							전년비 ('21/'22)	연평균 ('18~'22)
전체	1,110,889	1,105,984	1,138,097	1,339,608	1,295,485	100.0	-3.3	3.9
농산물	823,286	878,928	953,329	1,150,856	1,106,604	85.4	-3.8	7.7
축산물	147,440	141,272	114,643	126,087	108,989	8.4	-13.6	-7.3
임산물	140,163	85,784	70,125	62,665	79,892	6.2	27.5	-13.1

* 출처 : 농식품수출정보(www.kati.net)

- 라면 수출액은 1억 8,892만 달러(한화 약 2,475억 원)로 가장 높은 비중(8.6%)을 차지함.
뒤이어 조제식료품 기타(5.9%), 기타 무알콜 음료(3.5%), 조제분유(3.4%), 건조 김(2.2%) 순임

* 상위 5개 품목의 수출 규모는 모두 전년 대비 증가하였으며, 라면(26.0%)과 조제식료품 기타(17.6%)가 전년 대비 높은 상승세를 보임

한국의 對중국 수출 상위 5개 품목(2018~2022)

(단위 : 천 달러, %)

구분	2018	2019	2020	2021	2022	비중 ('22)	증감률	
							전년비 ('21/'22)	연평균 ('18~'22)
전체	1,110,889	1,105,984	1,138,097	1,339,608	1,295,485	100.0	-3.3	3.9
1 라면	93,290	124,435	149,096	149,898	188,920	8.6	26.0	19.3
2 조제식료품 기타	55,074	39,738	82,310	109,899	129,285	5.9	17.6	23.8
3 기타무알콜 음료	37,007	50,203	53,511	73,391	76,237	3.5	3.9	19.8
4 조제분유	78,995	73,774	62,050	72,889	73,794	3.4	1.2	-1.7
5 건조 김	12,241	38,953	21,886	45,674	48,873	2.2	7.0	41.4

* 출처 : 농식품수출정보(www.kati.net)

3. 통관 및 검역 제도

수출입절차

프로세스	상세내용	주체
해외 생산업체 등록	• 중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모든 해외 생산·가공·저장 업체는 중국 해관총서에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 등록' 진행 • 등록 유형 : ① 자체 등록 ② 추천 등록(식약처 식품안전정책과) - ① 자체 등록 : 추천 등록 대상이 아닌 식품 - ② 추천 등록 : △육류 △수산물 △제비집 제품 △계란 및 계란제품 △소 함유 밀가루 음식 △보건식품 △조미료 △건조과일 △특수선식식품 △유제품 등 총 18가지 식품 • 등록 완료 후 등록번호가 교부되며, 이를 식품 내·외포장에 표시, 세관신고서에 기재	국내 수출업체
품목별 수입조건 파악	• 수출 품목에 대한 중국의 위생기준, 검역 요건, 포장 및 라벨링 요건 등 관련 요건을 사전에 파악	국내 수출업체
수출신고 및 운송수단 선적	• 관세청 UNI-PASS 시스템을 통해 전자적으로 세관에 제반서류 제출 • 제출서류 : ① 수출신고서 ② 상업송장 ③ 포장명세서 등 • 수출신고 완료 후 '수출신고필증'이 교부되며, 수출신고가 수리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운송수단에 선적 완료	국내 수출업체
적하목록 사전제출	• 운송수단별 기한을 준수해 중국 해관총서에 적하목록 제출 • 제출내용 : ① 도착시간 ② 화물 정보(HS코드, 품목명 등) ③ 운송인 및 수하인 정보	중국 운송·수입 업체
수입신고	• 중국 도착 후 14일 이내 'Single window 시스템'으로 제반서류를 제출 • 제출서류 : ① 수입신고서 ② 상업송장 ③ 운송서류 ④ 포장명세서 ⑤ 검사검역신고서 ⑥ 원산지증명서 ⑦ 중국어 라벨 등	중국 수입업체
수입검사	• 'Single window 시스템'을 통해 수입검역 신청 • 제출서류 : ① 위생증명서 ② 상업송장 ③ 선하증권 등 운송서류 ④ 원산지증명서 ⑤ 무역계약서 ⑥ 중문라벨 등 • 검사내용 : ① 서류심사 ② 현물검사 ③ 라벨검사 - ① 서류심사 : 서류상의 이상이 없을 경우 현장검사 진행 - ② 현물검사 : 화물-서류간 일치, 포장 상태, 중문 라벨 존재 여부 검사 - ③ 라벨검사 : 식품 라벨의 라벨링 규정 준수 여부 검사	중국 수입업체
관세 납부 및 반출	• 납부고지서 발급 15일 이내에 관세 납부 완료 후 물품 반출 가능	중국 수입업체

통관 및 검역 제도

① 국내 수출 통관 절차

▶ 수출 전 준비사항

- 중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는 모든 식품의 해외 생산·가공·저장 업체는 중국 해관총서(GACC)에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 등록 필수

-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 등록 방식은 ① 자체 등록 및 ② 추천 등록으로 구분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 등록 방식

자체 등록	추천 등록 대상인 18개 식품에 해당하지 않는 식품은 기업이 자체적으로 등록하거나 대리인을 통해 해관총서에 신청 자체 등록 신청 시 제출 서류 <table> <tr><td>① 등록 추천서</td></tr> <tr><td>② 업체 신분 증명 서류</td></tr> <tr><td>③ 해당 기업이 중국 규정 및 요건에 부합한다는 성명</td></tr> </table>	① 등록 추천서	② 업체 신분 증명 서류	③ 해당 기업이 중국 규정 및 요건에 부합한다는 성명																				
① 등록 추천서																								
② 업체 신분 증명 서류																								
③ 해당 기업이 중국 규정 및 요건에 부합한다는 성명																								
추천 등록	- 추천 등록 대상 식품은 해당 기업이 소재한 국가 및 지역을 주관하는 당국을 통해 신청(식약처 식품안전정책과) 해관총서 지정 추천등록 대상 식품 유형 <table> <tr><td>① 육류 및 육류 제품</td><td>② 케이스</td></tr> <tr><td>③ 수산물</td><td>④ 유제품</td></tr> <tr><td>⑤ 제비집 및 제비집 제품</td><td>⑥ 벌꿀</td></tr> <tr><td>⑦ 계란 및 계란 가공품</td><td>⑧ 식용유지 및 유지 원료</td></tr> <tr><td>⑨ 소(猪) 함유 밀가루 음식</td><td>⑩ 식용 곡물</td></tr> <tr><td>⑪ 보건식품(건강기능식품)</td><td>⑫ 신선 및 탈수 채소, 건조 대두</td></tr> <tr><td>⑬ 조미료</td><td>⑭ 견과 및 씨앗류</td></tr> <tr><td>⑮ 건조 과일</td><td>⑯ 로스팅을 하지 않은 원두 및 코코아</td></tr> <tr><td>⑰ 특수선식식품</td><td>⑱ 곡물 제분 공업 제품 및 맥아</td></tr> </table> - 중국 국제무역단일창구(Single Window)를 활용하여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함 추천 등록 신청 시 제출 서류 <table> <tr><td>①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의 추천서</td></tr> <tr><td>② 업체 리스트와 업체 등록 신청서</td></tr> <tr><td>③ 업체 신분 증명 서류(주관 당국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 등)</td></tr> <tr><td>④ 해당 기업이 중국 규정 및 요건에 부합한다는 성명</td></tr> <tr><td>⑤ 주관 당국이 유관 업체에 대해 진행한 심사·검사 보고서</td></tr> </table>	① 육류 및 육류 제품	② 케이스	③ 수산물	④ 유제품	⑤ 제비집 및 제비집 제품	⑥ 벌꿀	⑦ 계란 및 계란 가공품	⑧ 식용유지 및 유지 원료	⑨ 소(猪) 함유 밀가루 음식	⑩ 식용 곡물	⑪ 보건식품(건강기능식품)	⑫ 신선 및 탈수 채소, 건조 대두	⑬ 조미료	⑭ 견과 및 씨앗류	⑮ 건조 과일	⑯ 로스팅을 하지 않은 원두 및 코코아	⑰ 특수선식식품	⑱ 곡물 제분 공업 제품 및 맥아	①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의 추천서	② 업체 리스트와 업체 등록 신청서	③ 업체 신분 증명 서류(주관 당국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 등)	④ 해당 기업이 중국 규정 및 요건에 부합한다는 성명	⑤ 주관 당국이 유관 업체에 대해 진행한 심사·검사 보고서
① 육류 및 육류 제품	② 케이스																							
③ 수산물	④ 유제품																							
⑤ 제비집 및 제비집 제품	⑥ 벌꿀																							
⑦ 계란 및 계란 가공품	⑧ 식용유지 및 유지 원료																							
⑨ 소(猪) 함유 밀가루 음식	⑩ 식용 곡물																							
⑪ 보건식품(건강기능식품)	⑫ 신선 및 탈수 채소, 건조 대두																							
⑬ 조미료	⑭ 견과 및 씨앗류																							
⑮ 건조 과일	⑯ 로스팅을 하지 않은 원두 및 코코아																							
⑰ 특수선식식품	⑱ 곡물 제분 공업 제품 및 맥아																							
①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의 추천서																								
② 업체 리스트와 업체 등록 신청서																								
③ 업체 신분 증명 서류(주관 당국이 발급한 사업자등록증 등)																								
④ 해당 기업이 중국 규정 및 요건에 부합한다는 성명																								
⑤ 주관 당국이 유관 업체에 대해 진행한 심사·검사 보고서																								

- 등록 시 서면·영상·현장 검사 등을 통해 평가 심사가 진행되며, 등록 유효기간은 5년으로 만료 3~6개월 전 갱신 신청을 할 수 있음

- 수출업체는 등록된 교부번호를 식품 내·외포장에 표시, 세관신고서에 기재해야 함

품목별 수입요건 파악	● 중국은 식품 통관 및 검역 절차가 까다로우므로 수출 품목에 대한 중국 국가표준(GB)·검역 요건·포장 및 라벨링 등 관련 요건을 사전에 파악 필요 - 수입식품, 식품첨가제, 식품 관련제품은 중국 국가표준화관리위원회(SAC)의 식품안전국가표준에 부합해야 하며 모든 원재료, 식품첨가제, 영양강화제는 중국 심의 기준에 부합함이 증명되어야 함 - 중문 식품 라벨 및 설명서가 없거나, 규정을 준수하지 않은 경우 수입 불가함. 라벨에는 제품명, 원산지, 성분, 생산일자 및 유통기한, 보관방법, 수입자 혹은 중국 유통상 정보 등이 기재되어 있어야 함
원산지 증명서 발급	● 중국 수출 시 한-중 FTA 및 RCEP 협정을 활용하고자 하는 수출업체는 사전에 원산지 증명서 발급 필요 - FTA 관세율, RCEP 관세율을 활용할 경우 원산지증명서 제출 필수 - 대한상공회의소 및 세관을 통해 수출물품의 선적이 완료되기 전까지 기관발급을 신청해야 하며, 선적일로부터 7영업일 이내에 신청한 경우 선적 완료 전 발급 신청한 것으로 간주함

▶ 국내 수출통관 절차

- 수출업체는 상업송장, 포장명세서 등을 기반으로 수출신고서 작성 후 관세청 UNI-PASS를 통해 수출신고 필수

- 수출신고는 수출업체(화주)와 수출업체를 대신하는 관세사·관세법인·통관취급법인·완제품 제공자 명의로 신고할 수 있음
- 접수 결과에 따라 ① 서류 심사 후 수리 ② 현품 검사 후 수리 ③ 자동수리로 구분해 수출통관 진행

수출신고 수리 유형

수출신고

서류 심사 후 수리	실제 신고내용과 수출신고 근거 서류상의 일치 여부 확인
현품 검사 후 수리	우범성이 높은 물품을 대상으로, 수출신고 물품 외 은닉 물품 여부, 신고사항과의 일치 여부를 확인
자동 수리	세관의 심사 없이 자동 수리 후 수출신고필증 발급

- 수출신고 수리 후 수출업체는 '수출신고필증'을 수령함
- 수출업체(화주)는 관세법에 따라 ① 수출신고필증 ② 수출품 가격결정에 관한 자료 ③ 수출 거래관련 계약서 및 이에 갈음하는 서류 ④ 반송신고필증 등을 수리일로부터 3년간 보관해야 함

수출검역

- 중국과 합의된 요건이 있거나, 수입업체가 요구하는 경우 수출검역 신청 필요
 - 중국으로 △쌀 △포도 △파프리카 △종자류 수출 시 농림축산검역본부에 수출검역을 신청해야 함
 - 수출검역 신청 시 UNI-PASS를 통해 수출검사신청서 및 제반 서류를 제출해야 함

수출검역 신청 시 제출 서류

식물검역	① 수출식물 검사 신청서
	② 검사대상 식물 명세서(수출검사 대상품목이 2개 이상인 경우)
	③ 수입허가 증명서(상대국의 사전허가가 필요한 경우)
	④ 수출검역 요령에 명시된 수입국 요구사항을 준수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수입국이 검사증명서에 부기를 요구할 경우)
축산물검역	① 수출 검사 신청서
	② 선적 관련 서류
	③ 수출 상대국 요구사항(상대국의 요구사항이 있는 경우)

- 수출검역은 일반적으로 신청인이 희망하는 장소·시간에 실시하며, 수출 상대국의 식물검역요건에 적합하는지 여부를 검사함
- 수출검역 결과 합격 시 수출식물검역증명서가 교부되며, 불합격 시 신청자가 소독하거나 선별한 후 재검역을 신청할 수 있음

운송수단
선적

- 수출업체는 수출신고 수리일로부터 30일 내에 선박 등 운송수단에 적재 필요
 - 단, 최대 1년 이내 범위에서 적재 기간 연장이 가능함

② 중국 수입제도 및 통관·검역 절차

▶ 중국 수입제도

개요	● 중국은 품목에 따라 ① 수입금지 ② 수입제한 ③ 쿼터관리 ④ 수입자유화물 수입통관 제도를 운영	
	- 수출하고자 하는 식품이 어느 품목에 해당하는지 사전에 확인 후 허가증 등 제반 서류를 준비해야 함	
	중국 수입통관 제도	
	수입금지	마약, 무기, 동물 사체나 뼈 등 법률상 교역을 금지하는 품목 등
	수입제한	중고 기계 전자제품, 오존층 소모 물질 등의 수입량을 제한하기 위한 '수입 허가증 관리 화물 목록'을 발표하고 있으며, 해당 물품은 중국 상무부의 '수입허가증'을 반드시 취득하여야 함
	쿼터관리	농산품, 양모, 화학비료 등 쿼터 관리 대상은 중국 정부가 할당량을 정하고 초과 시 높은 세율의 관세를 부과함
	수입자유화물	수입 제한을 받지 않으나 일부 상품은 화물 수입 현황을 감시하기 위해 '자동수입허가관리대상'이 되며 해당 물품은 '자동수입허가증'을 반드시 취득하여야 함

▶ 중국 수입통관·검역 절차

통관 고유번호 발급	● 중국 수입업체는 수입신고 전 중국 해관으로부터 통관고유번호(CN Number) 발급 필수	
적하목록 사전제출	- 통관고유번호는 베이징·상하이·광저우·선전 등 각 관할 해관 사이트를 통해 직접 신청해야 함	
	- 각 관할 세관 사이트는 중국 해관총서 사이트에서 조회할 수 있음	
	→ 중국 해관총서 URL : www.customs.gov.cn	
	- 단, 통관 고유번호를 발급받은 에이전트와 계약하여 수입통관을 진행할 수도 있음	
	● 운송업체는 수입국 도착 전 운송수단별 기한을 준수해 적하목록을 중국 해관총서에 제출 필수	
	- 도착 시간, HS CODE·품목명 등의 화물 정보, 운송인 및 수하인 정보 등을 제출해야 함	
	중국 운송수단별 적하목록 제출기한	
	컨테이너 선박	선적항에서 선적 24시간 전
	기타 선박	목적항 도착 24시간 전
	4시간 이하 항공운송	항공기 이륙 4시간 전
	4시간 이상 항공운송	목적항 도착 4시간 전
	- 적하목록을 제출하지 않는 경우 운송수단의 입국 신고절차 수행이 일시 중지되며, 중국 해관은 적하목록이 신고되지 않은 화물에 대해 반송 명령을 내릴 수 있음	

수입신고

● 중국 수입업체는 수입항 도착 후 14일 이내 수입신고서 및 기타 서류를 관할 세관에 제출 필요

- 중국 해관총서의 국제무역 단일창구(Single Window)를 통해 수입신고를 진행할 수 있음
→ 중국 국제무역 단일창구 URL : www.singlewindow.cn
- 수입신고시 수입신고서를 비롯한 제반 서류를 제출해야 함
- 영유아 조제분유, 유제품, 육류, 수산물, 제비집 등 품목은 한국 생산공장이 중국 인증인가관리 위원회에 등록되어 있어야 수입신고가 가능함

중국 수입신고 제출서류

① 수입신고서
② 상업송장
③ 선하증권 및 항공화물 운송장 등 운송서류
④ 운송보험서류
⑤ 포장명세서
⑥ 검사검역신고서
⑦ 원산지증명서
⑧ 품질증명서(건강기능식품의 경우)
⑨ 수입식품의 중국어 라벨
⑩ 특정 물품의 경우 관련 수입 라이선스(동식물 수입허가증)
⑪ 기타 세관이 필요 시 요구하는 서류(원산지증명서, 위생증명서, 무역계약서 등)

- 수입신고 기한을 경과하여 신고하는 경우, 과세 가격의 0.5%에 해당하는 신고 연체료를 납부해야 함
- 해관은 수입업체가 제출한 서류에서 다음의 사항을 심사함

중국 해관 수입신고 심사 사항

① 서류의 구비 요건 충족 및 무결성 여부
② 수입신고된 물품이 수입금지 또는 수입제한 품목에 해당하는지 여부
③ 운송인이 제출한 적하목록과 수입신고인이 제출한 통관 서류와의 상세 내역 일치 여부
④ 신고된 가격의 적정성 여부

-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AQSIQ)은 수입화물 관련 표준(GB) 준수 및 신고된 서류와 화물 간의 일치 여부를 검사함
 -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은 식품의 품질계량 및 수출입 위생관리를 총괄하는 기관으로, 중국 수입업체가 식품 수입 시 해당 기관의 식품 수입 검사를 받을 수 있음
 - 중국 수입업체는 국제무역 단일창구를 통해 수입검역을 신청하며, △위생증명서 △상업증장 △선하증권 등 운송서류 △원산지증명서 △무역계약서 △중문라벨 등 제반서류를 제출함
 - 수입식품에 대해 ① 서류검사 ② 현물검사 ③ 라벨검사가 진행될 수 있으며, 서류검사 및 현물검사 합격 시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 '검사검역증명서'를 발급

중국 수입검역 제도

서류검사	• 수입업체가 제출한 서류를 검토한 뒤, 이상이 없는 경우 현물검사 진행
현물검사	• 실제 화물과 서류상의 일치 여부, 포장 상태 및 중문 라벨 존재 여부 등을 검사함 • 검사 시 이상이 발견될 경우 정밀검사가 추가로 진행될 수 있음 • 샘플을 추출해 검사할 경우 화물의 0.001%를 채취하며, 품목별 최소 3건 이상 채취함
라벨검사	• 무작위로 진행되며, 식품 라벨의 라벨링 규정 준수 여부를 검사함 • 검사 대상으로 선정된 식품은 원본 라벨, 중문 라벨, 번역 및 설명자료 등을 제출해야 하며, 제출된 자료와 실제 라벨 및 신고된 내용 간의 일치 여부를 중점적으로 검사함 • 이외에도 인쇄 상태, 글자 크기, 부착 위치 등을 검사함

- 해관 관리구역에서 진행되는 검사 비용은 수입업체가 부담하지 않으나, 검사 중 발생하는 화물의 개봉, 재포장, 이동 비용은 수입업체가 부담함

관세 납부 및 물품 반출

- 수입업체는 해관이 납부고지서를 발급한 날로부터 15영업일 이내에 관세를 납부해야 함
 - 수입업체는 관세 납부를 완료한 뒤 물품을 반출할 수 있으며, 현장 또는 전자적으로 납부할 수 있음
 - 관세 납부 후 물품을 보세구역에서 반출하면 수입통관 과정이 완료됨

FTA 체결현황

중국의 FTA 체결현황

기체결	협상중	검토중
(발효 및 서명) RCEP, 캄보디아, 모리셔스, 몰디브, 조지아, 호주, 한국, 스위스, 아이슬란드, 코스타리카, 페루, 싱가포르, 뉴질랜드, 칠레, 파키스탄, 아세안, 홍콩, 마카오, 니카라과	(협상중) GCC, 노르웨이, 한중일, 스리랑카,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몰도바, 파나마 (후속 및 개선 협상) 한국, 페루	콜롬비아, 피지, 네팔, 캐나다, 방글라데시, 몽골, 파푸아뉴기니, 스위스

* 주 : 2024.1. 조회 기준

*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FTA 강국, KOREA(www.fta.go.kr)

우리나라와의 FTA 체결현황

발효	서명/타결	협상중	재개개시 여건조성
한-중 FTA, RCEP, APTA	해당사항 없음	한-중-일 FTA	해당사항 없음

* 주 : 2023.11. 조회 기준

* 출처 : 산업통상자원부 FTA 강국, KOREA(www.fta.go.kr)

02

품목별 수출가능 현황 3)

1. 수출 가능 품목

● 농산물

- 곡 류 : 옥수수, 녹두, 콩, 쌀

* 쌀의 경우, 「한국산 쌀의 중국 수출검역요령」(고시 제2016-1호)에 따라 가공공장 등록, 훈증소독 등 중국 측과 합의된 요건에 따라서만 수출 가능

- 과실류 : 밤, 포도

* 포도의 경우, 「한국산 포도의 중국 수출검역요령」에 따라 과수원 및 선과장 등록, 예찰 및 재배지검사 등 중국 측과 합의된 요건에 따라서만 수출 가능

- 채소류 : 무, 당근, 배추, 양배추, 양파, 생강, 브로콜리, 수삼, 파프리카

* 파프리카의 경우, 「한국산 파프리카 생과실의 중국 수출검역요령」에 따라 재배온실·선과장·저온창고 및 수출업체등록, GAP(농산물우수관리) 및 IPM(병해충종합관리) 이행 등 중국측과 합의된 요건에 따라서만 수출 가능

- 종자류 : 콩, 잠두콩, 가지, 갓, 고추, 근대, 꽃양배추, 당근, 들깨, 멜론, 무, 박, 배추, 백경채, 부추, 브로콜리, 삼엽채, 상추, 수박, 싹갓, 시금치, 아욱, 양배추, 양파, 오이, 참외, 청경채, 치커리, 콜라비, 토마토, 파, 호박, 겨자, 담배

* 종자류의 경우 사전에 수입자가 중국 검역기관으로부터 수입허가서(Import permit)에 해당하는 '국(경)외 도입 농업종묘 검역비준서' 발급받고 수출자는 수입허가서 사본을 수출검역 신청 시 첨부 제출 필요

* 토마토(*Solanum* spp.), 고추속(*Capsicum* spp.)종자는 중국 WTO/SPS통보문에 따라 해당 수입 요건에 충족해야 함 (수출지원과-3938호('21.10.21.) 참조)

- 버섯류 : 팽이, 새송이(큰느타리), *Agaricus*속

- 절화류 : 심비디움, 장미, 백합, 국화, 거베라, 글라디올러스, 금어초, 튜립, 칼라, 카네이션, 해바라기꽃, 스타치스, 아이리스, 장미, 안개초, 텐드로비움

- 화훼묘 : 텐드로비움·심비디움·호접란(묘·분화), 선인장(접목선인장), 칼란 코에묘·삽수, 미모사묘, 맨드라미묘, 백합구근

* 심비디움묘의 경우 「한국산 심비디움의 중국 수출검역요령」에 따라 재배포장 등록, 중국 측의 우류병해충 무감염 증명 부기 등

- 목류 : 동백나무, 단풍나무, 모과나무, 목백일홍, 소사나무, 석류나무, 산수유나무, 애기사과 나무, 주목나무, 철쭉나무, 피라칸사나무, 향나무(진백) 춘란(*Cymbidium forrestii*) 등

* 재식용 목목의 경우 사전에 중국에서 수입자가 아래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한국에서 수출검역신청 시 동 증명서 사본(번역본)을 제출해야 중국측 검역요건에 적합한 수출식물 검역증명서 발급 가능

3) 자료 : 농산물 수출 검역 조건·농림축산검역본부(2023), <https://www.qia.go.kr/listWebQia3WGYJYQ.do?clear=1>

- 재배매체가 없는 경우 : 국가 농업(임업)부 또는 각 성(省), 자치구, 직할시 농업(임업)청(국)이 발급하는 '국(경)외 도입 농업종묘 검역비준서(검역요구사항이 기재되어 있음)'
- 재배매체가 있는 경우 : 국경검역을 담당하고 있는 해관총서(구, 질검총국) 지역해관에서 발급하는 '중화인민공화국 수입동식물검역허가증(검역요구사항이 기재되어 있음)'
- 기타 : 쌀가루, 밀가루, 찹쌀가루, 대두분말, 단풍나무각재, 소나무각재
 - * 2022.2.1.일부터 소나무재선충발생국가산 소나무(원목, 제재목) 수입검역요구 시행함에 따라 해당 수입요건 (소독처리기준 등)을 충족해야 함(수출지원과-19호('22.1.3) 참조)

● 축산물

- 보조사료, 수생동물용 배합사료, 계란 분말, 유제품, 삼계탕
 - * 삼계탕의 경우, HPAI 방역지역(10km 대) 내에서 생산(사육, 도축, 가공 등)되는 제품 수출 불가

2. 수출 불가능 품목

● 농산물

- 묘목류 : 소나무묘(Pinus densiflora), 곰솔묘(Pinus thunbergii)
- 기타 : 꽃감, 건곤드레, 건대추침, 냉동딸기, 건조감귤, 냉동홍시, 수수가루, 수수, 누룩, 단호박, 잣(식용), 대두, 보리, 맥아, 찹깨, 메밀, 홍화씨, 달맞이꽃씨 등
 - * 종자류 중 식용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도 수입가능 여부 확인 필요
- 단감, 감귤, 참외, 딸기, 토마토 5품목은 중국에 수출허용을 요청하여 상대국이 PRA 절차를 진행 중임
- 흙 부착된 단풍나무 등 조경수 수목
 - * 중국은 '03. 2월부터 시행된 수입위험분석 관리제도에 따라 국산 생과실, 과채류, 재식용 식물 등을 수입금지품으로 지정 (다만 제도시행 전 상업적 수출실적이 있는 품목에 한해 수출 허용) 하고 있어, 국산 농산물의 중국수출을 위해서는 중국에 수입허용 요청 필요

축산물 품목별 수출 가능 여부 확인 방법

● 축산물 품목별 수출 요건

- 나라마다 축산물의 수입에는 국가에서 정한 위생 조건이 있음
- 수출 제품에 대한 수출증명양식을 별도로 정하고 있는 국가들도 있으므로, 반드시 수출 전 해당 국가의 요구 조건을 확인하여야 함

● 검색 방법

- 농림축산검역본부(<https://www.qia.go.kr>) 사이트(농림축산검역본부 > 동물검역 > 동물축산물검역 > 수출축산물검역 > 품목별수출요건 > DB검색)
- 국가명과 품목을 검색하여 수출 가능 여부 확인 가능

1. 농림축산 검역본부 사이트	2. 동물검역 > 동물축산물 검역	3. 수출축산물검역 > 품목별 수출 요건 > DB 검색
		

3. 현지 바이어 인터뷰

인터뷰 업체 정보

업체명	월마트(중국)
업체 유형	도매업체
담당자명	Mr. Nam(매니저)

- 현지 국가에서 인기 있거나 수출 가능성이 있는 한국산 농식품
 - 수입할 수 있는 한국산 농산물 중 한국산 청양고추에 대한 수요가 있음. 청양고추는 중국 고추와 다른 매운맛을 갖고 있다는 점과 한국 고추를 대표하는 품종이라는 점에서 선호가 있음
- 수입 시 애로사항
 - 중국 정부는 많은 농산물에 대해 수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수입할 수 있는 채소와 과일 종류를 명시해 제한하고 있음. 신선식품 중에서는 포도, 당근, 무, 콩나물, 상추, 배추, 팽이버섯, 파프리카 등 일부 품목만 수입할 수 있으나 수입통관 절차, 수입 관세, 배송기간 및 신선도 문제로 인해 경쟁력이 떨어짐
 - 한국 배는 우수한 품질로 수요가 높았으나, 수입제한으로 인해 중국 시장에 수출이 어려워짐
 - 중국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한국산 과일은 포도이며 매년 9월부터 10월까지 중국의 고급 슈퍼마켓에서 판매되고 있으나, 중국산 포도의 품질이 좋아지고 저렴해지는 탓에 한국산 포도 및 샤인머스켓은 중국으로 수입이 어려워지고 있음

03

비관세장벽 현황

1. SPS

주요 SPS 내용

- 중국은 2010년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가 제정한 식품안전국가관리방법을 폐지하고 2019년부터 식품안전표준관리방법으로 개정함. 수입식품은 국가표준 미지정 상태이더라도 식품안전법 및 국무원 관련부처에서 제정한 관리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야 함
- 중국은 2003년 2월 수입위험분석 관리제도를 도입하고 국가별 수입금지 품목을 지정함. 한국의 생과일과 채소류 품목 중 일부도 수입금지 품목으로 지정되었으며, 단감, 감귤, 참외, 딸기, 토마토, 버섯 등의 품목은 한국 정부의 수출허용 요청에 따라 PRA가 진행 중임
 - 파프리카(피망)의 경우 2020년 11월부터 수출이 시작됨
-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식품과 접촉하는 용기와 판지에 대한 기준을 마련, 이에 부합하는 용기와 판지만을 사용하도록 의무화함
 - 2021년 7월, 종이, 판지, 플라스틱 및 수지 관련 19가지 식품 접촉 물질을 승인함
- 식품 가공용 기계와 식품에 직접 접촉되는 식품 포장용 기계와 관련한 안전과 위생에 대해 규정함
 - 식품 포장용 산화물계 투명 배리어 플라스틱 적층 필름 및 백 국가표준이 시행을 공고함
- 11개의 식품 관련 첨가물에 대한 최종 의견수렴을 진행함. 신재료, 사용범위 확대 및 신규 수치
- 2023년 8월 25일 중국 해관총서는 동물 전염병 발생 국가로부터 수입을 금지하는 품목의 목록을 공고함. 해당 공고에는 한국산 가금류 및 관련 제품, 돼지 및 관련 제품과 쇠고기 및 관련 제품 등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가 포함됨

• 주요 SPS 규정별 사이트 주소

분류	사이트 명칭	URL
SPS 개정안	E-PING (WTO 개정 통보문 통합 사이트)	https://www.epingalert.org/
잔류농약 허용치	SDT DATA (국가 농업 및 식품 표준 공공 서비스 플랫폼)	https://www.sdtdata.com/fx/fmoa/tsLibList
식품 첨가물 허용치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http://www.nhc.gov.cn/sps/s3593/201412/d9a9f04bc35f42ecac0600e0360f8c89.shtml

통보문 개정현황(2023년)

• 한국산 쇠고기, 돼지고기, 가금류 수입금지

문서번호	-
유형	식품위생 및 동식물 검역
세부 내용	2023년 8월 25일, 중국 해관총서는 동물 전염병이 발생 국가로부터 수입을 금지하는 품목의 목록을 공고함. 해당 공고에는 한국산 가금류 및 관련 제품, 돼지 및 관련 제품과 쇠고기 및 관련 제품 등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가 포함됨 2023년 한국은 아프리카돼지열병을 포함한 돼지열병, 조류인플루엔자(H5N1), 구제역 발생 사실을 보고한 바 있음 - 우리나라의 동물 전염병 발생 보고에 따라 중국 외에도 홍콩, 싱가포르 등 여러 수출 대상국에서 한국산 육류에 대한 수입 금지를 조치하고 있음 - 따라서 한국산 육류 및 육류 제품을 수출하는 식품 기업은 수출 대상국의 수입 규제 동향을 꾸준히 확인하며 수출을 준비해야 함
통보일	-
시행예정일	2023년 08월 25일
개정현황	질병 유행국가의 동물 및 그 제품 수입금지 알람표(2023년 08월 21일 개정)
출처	https://www.kita.net/tradeNavi/nonTraiffMeasure/nonTraiffMeasureDetail.do?ntmId=NTB0203640

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주요 변동사항(2023년)

- 식품첨가물 ‘Ascorbyl palmitate(enzymatic method)’ 등 허용기준 개정

성분명	대상 품목(한국 관련)	변경 전	변경 후
Ascorbyl palmitate (enzymatic method)	즉석식품류	-	0.2g/kg
시행일	2023년 5월 6일		
관련 규정	중국 식품안전국가표준 식품첨가물 사용기준(GB 2760)		
한국 관련 기준	현재 국내 식품공전에 해당 물질은 조제유류, 영양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용 특수조제식품에 한하여 사용을 허가하고 있으며 그 함량은 0.05g/kg 이하가 되어야 함. 단, 영양아용 이유식은 0.2g/kg 이하로 사용해야 함		

- 식품첨가물 ‘Blueberry anthocyanin’ 등 신규 등록

성분명	대상 품목(한국 관련)	변경 전	변경 후
Blueberry anthocyanins	농축유류	-	원유배수에 따라 환산
	음료류	-	0.8g/kg * 고체음료의 경우 액체 질량 전환 후 0.8g/kg 첨가
	빵류	-	4g/kg
시행일	2023년 5월 6일		
관련 규정	중국 식품안전국가표준 식품 영양강화제 사용기준(GB 14880)		
한국 관련 기준	현재 국내 식품공전에 해당 물질은 식품첨가물로 등재되어 있지 않음		

- 식품첨가물 ‘L-selenium-methylselenocysteine’

성분명	대상 품목(한국 관련)	변경 전	변경 후
L-selenium- methylselenoc- ysteine	• 농산가공식품류(쌀, 밀가루, 곡류) • 빵류 • 과자류 • 음료류(두유류, 발효음료류)	-	GMP(GB 14880을 따름)
시행일	2023년 5월 6일		
관련 규정	중국 식품안전국가표준 식품 영양강화제 사용기준(GB 14880)		
한국 관련 기준	현재 국내 식품공전에 해당 물질은 식품첨가물로 등재되어 있지 않음		

• 식품첨가물 ‘Taurine’등 기준 규격 개정

성분명	대상 품목(한국 관련)	변경 전	변경 후
Taurine	음료류	-	0.1g/kg~0.6g/kg
시행일	2023년 5월 6일		
관련 규정	중국 식품안전국가표준 식품 영양강화제 사용기준(GB 14880)		
한국 관련 기준	현재 국내 식품공전에 해당 물질은 조제유류,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용 이유식, 영유아용 특수조제식품에 한하여 사용이 허가됨		

• 식품첨가물 ‘Vitamin B1’등 기준 규격 개정

성분명	대상 품목(한국 관련)	변경 전	변경 후
Vitamine B1	음료류	-	2mg/kg~5mg/kg
시행일	2023년 5월 6일		
관련 규정	중국 식품안전국가표준 식품 영양강화제 사용기준(GB 14880)		
한국 관련 기준	현재 국내 식품공전에 해당 물질은 조제유류,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용 이유식, 영유아용 특수조제식품에 한하여 사용을 허가하고 있으며 그 함량은 0.2~0.5mg/일 이어야 함		

• 식품첨가물 ‘Vitamin B2’등 기준 규격 개정

성분명	대상 품목(한국 관련)	변경 전	변경 후
Vitamin B2	음료류	-	2mg/kg~5mg/kg
시행일	2023년 5월 6일		
관련 규정	중국 식품안전국가표준 식품 영양강화제 사용기준(GB 14880)		
한국 관련 기준	현재 국내 식품공전에 해당 물질은 조제유류, 영아용 조제식, 성장기용 조제식, 영유아용 이유식, 영유아용 특수조제식품에 한하여 사용을 허가하고 있으며 그 함량은 0.3~0.6mg/일 이어야 함		

• 식품첨가물 ‘Beta-amylase’등 기준 규격 개정

성분명	대상 품목(한국 관련)	변경 전	변경 후
Beta-amylase	전분류 전분제품	-	GB 1886.174를 따름
시행일	2023년 8월 1일		
관련 규정	중국 식품안전국가표준 식품첨가물-식품산업용 효소 사용기준(GB 1886.174)		
한국 관련 기준	현재 국내 식품공전에 해당 물질은 식품첨가물로 등재되어 있지 않음		

• 식품첨가물 ‘Sulfuric acid’ 등 기준 규격 개정

성분명	대상 품목(한국 관련)	변경 전	변경 후
Sulfuric acid	맥주 식물성 유지 동물성 유지 기타유지	-	GB 29205를 따름
시행일	2023년 8월 1일		
관련 규정	중국 식품안전국가표준 식품첨가물-황산 사용기준(GB 29205)		
한국 관련 기준	현재 국내 식품공전에 해당 물질은 식품첨가물로 등재되어 있지 않음		

• 식품첨가물 ‘2’-fucosyllactose(2’-FL)’ 등 기준 규격 개정

성분명	대상 품목(한국 관련)	변경 전	변경 후
2’-fucosyllactose (2’-FL)	조제유류	-	0.7~2.4g/L
시행일	2023년 10월 7일		
관련 규정	중국 식품안전국가표준 식품 영양강화제 사용기준(GB 14880)		
한국 관련 기준	현재 국내 식품공전에 해당 물질은 식품첨가물로 등재되어 있지 않음		

• 식품첨가물 ‘Lacto-N-neotetraose’ 등 기준 규격 개정

성분명	대상 품목(한국 관련)	변경 전	변경 후
Lacto-N- neotetraose	조제유류	-	0.2~0.6g/L
시행일	2023년 10월 7일		
관련 규정	중국 식품안전국가표준 식품 영양강화제 사용기준(GB 14880)		
한국 관련 기준	현재 국내 식품공전에 해당 물질은 식품첨가물로 등재되어 있지 않음		

• 식품첨가물 ‘Magnesium lucate’ 등 기준 규격 개정

성분명	대상 품목(한국 관련)	변경 전	변경 후
Magnesium lucate	커피 발효음료류 탄산음료류 기타음료류 두유류 인삼·홍삼음료	-	GB 14880을 따름
시행일	2023년 10월 7일		
관련 규정	중국 식품안전국가표준 식품 영양강화제 사용기준(GB 14880)		
한국 관련 기준	현재 국내 식품공전에 해당 물질은 식품첨가물로 등재되어 있지 않음		

• 식품첨가물 ‘xanthan gum’ 등 기준 규격 개정

성분명	대상 품목(한국 관련)	변경 전	변경 후
xanthan gum	조제유류	-	0.5g/kg
	기타음료		0.75g/kg, 0.5g/kg
시행일	2023년 10월 7일		
관련 규정	중국 식품안전국가표준 식품첨가물 사용기준(GB 2760)		
한국 관련 기준	현재 국내 식품공전에 해당 물질은 식품첨가물로 등재되어 기술적 효과를 달성하는데 필요한 최소량으로 사용되어야 함		

2. TBT ⁴⁾

주요 TBT 내용

-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는 사전포장식품 영양성분 라벨통칙 개정안을 2021년 10월에 마련하여 의견수렴을 개시함. 개정안은 라벨링 표준의 적용 범위를 명확하게 규정하고, 필수 라벨링 표시 내용 및 경고 문구를 추가함
 - 소비자에게 직접 제공하는 사전 포장식품 영양 라벨에만 적용되며, 건강기능식품 및 사전 포장된 특수 식이용 식품의 영양 라벨 표시에는 미적용됨
- 중국은 음료 성분 및 라벨 표시 요건을 개정한《식품안전 국가표준 음료》를 발표하고 2022년 12월부터 시행함
 - 금속 캔에 들어있는 주스류 및 음료의 아연, 구리, 철의 합계는 20mg/L 이하이어야 하며, 콩 또는 단백질이 함유된 음료는 우레아제 시험 결과가 음성이어야 함
 - 수입 음료 제품의 라벨에는 중국 법규 및 표준에 적합한 중문 라벨이 있어야 함
-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 및 공업정보화부는 공동으로 ‘식품 및 화장품 과대포장 규제’ 국가표준을 발표하였으며 2022년 8월 15일부터 시행함
 - 신규 표준은 식품 및 화장품의 포장 공간비율, 포장 횟수, 포장 원가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규정했으며, 제과, 주류, 차, 음료, 건강기능식품 등 품목별로 포장 규제사항을 명시함
 - 2023년 9월 부속서를 통해 상업용 차와 관련 제품 및 영유아용 조제 식품의 포장 겹수, 포장 비용, 총 상품 중량, 분류 및 k값 등이 추가되었으며, 표준 시행 요건이 일부 개정됨

4) TBT(The Technical Barriers to Trade)는 각 국가가 지정한 자국의 기술 규정, 표준 및 적합성 평가 절차를 준수하는 것으로, 대표적으로 라벨링, 인증 요건 등이 있음. 일례로, 국내 식품 라벨링 규정과 수출대상국의 라벨링 규정이 상이할 경우 수출기업은 수출대상국의 라벨링 규정을 숙지하여 이를 준수해야 하므로 수출 장애 요소가 될 수 있음

- 중국 해관총서는 2020년 발표한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식품 안전관리방법》의 개정안을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함
 - 해외생산업체 등록관리 품목 범위 확대, 수입식품에 대한 심사 및 평가 다양화, 수입 건강식품 및 특수군 식품에 대한 라벨 스티커 부착 불가 등의 강화된 규정이 포함됨
 - 기존의 수출입식품 안전관리방법, 수출입 별꽃 검사검역 관리방법, 수출입 수산물 검사검역 감독관리방법, 수출입 육류제품 검사검역 감독관리방법, 수출입 유제품 검사검역 감독관리방법, 수출식품 생산업체 준비관리규정은 통합 폐지됨
- 개정된 《수입식품 해외생산업체 등록관리 규정》이 2022년 1월 1일부터 발효됨. 이에 따라 정부관리 대상 식품 품목이 18개 품목으로 증가했으며 해당 품목은 수출 정부의 추천 등록을 통해서만 해외생산업체 등록이 가능함. 그 외 모든 수입식품은 민간관리 대상 품목으로 분류되며 수출 기업 또는 대리인이 2021년 11월 1일부터 국제무역 단일창구를 통해 직접 등록 신청을 할 수 있음
 - 정부관리 대상 품목(18개): ① 육류 및 육류 제품, ② 케이싱, ③ 수산물, ④ 유제품, ⑤ 제비집 및 제비집 제품, ⑥ 별꽃, ⑦ 계란 및 계란 가공품, ⑧ 식용유지 및 유지 원료, ⑨ 소(馅) 함유 밀가루 음식, ⑩ 식용 곡물, ⑪ 보건식품(건강기능식품), ⑫ 신선 및 탈수 채소, 건조 대두, ⑬ 조미료, ⑭ 견과 및 씨앗류, ⑮ 건조 과일, ⑯ 로스팅을 하지 않은 원두 및 코코아, ⑰ 특수 선식식품, ⑱ 곡물 제분 공업 제품 및 맥아

• 주요 TBT 규정별 사이트 주소

분류	사이트 명칭	URL
TBT 개정안	E-PING (WTO 개정 통보문 통합 사이트)	https://www.epingalert.org/
식품 라벨링 규정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http://www.nhc.gov.cn/wjw/aqbz/201106/53c53d99b71940c7a74830f86b46f8db.shtml
사전포장식품 영양성분 라벨통치 (기준규정/ GB28050-2011)	중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	http://www.nhc.gov.cn/wjw/aqbz/201306/17e7d74af39c4b279d8ef26c4a6a6a04.shtml
AQSIQ 인증	AQSIQ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	https://www.aqsiq.net/application/food-register

주요 품목 라벨링 예시

• 주요 라벨링 표기사항

라벨 표기사항 (필수항목)	• 제품명 • 성분표 • 중량 및 규격		• 생산자, 수입업체 또는 현지 중개판매자 명칭/ 주소/연락처 • 생산일자 및 유통기한 보관방법	• 식품 생산허가증 번호 • 영양라벨 • 원산지
	(권장항목)	로트번호	섭취 방법	알레르기 유발물질
라벨 표기사항 (가이드)	표기 언어	• 표준 중국어(간체자가 기본이며, 병용 표기 가능)를 원칙으로 하며 외국어 사용 시 해당 중국어와 대응관계가 있어야 함		
	제품명	• 규정이 있는 경우 규정 명칭을 사용하며, 없는 경우 식품의 속성을 반영하는 명확한 명칭을 사용해야 함		
		• 동식물을 원료로 생물의 개체, 기관, 조직 등 특정 형태를 모방한 경우 인조, 모방 등의 문자를 붙여야 함		
		• 가장 눈에 띄는 위치에 표시해야 함		
	성분표	• 첨가량을 내림차순으로 나열해야 함		
		• 2% 이하 배합원료는 제외함		
		• 중국국가표준(GB)이 규정하는 식품첨가제 통용 명칭을 표시해야 함		
	중량 및 규격	• 제조 시 사용되는 공정수와 식용 가능한 포장재를 표시해야 함		
		• 법적 계량 단위((밀리)리터, (킬로)그램)를 사용해야 함		
		• 내용량에 따른 글자 부호 최소 높이(2~6mm)를 준수해야 함		
	날짜 표시	• 보충 인쇄 및 별도 스티커는 금지함		
		• 생산일자와 유통기한을 분명하게 명시해야 함		
		• 알코올함량 10% 이상의 주류, 식초, 식염, 고체 설탕은 표기 면제가 가능함		
		• 년, 월, 일 또는 국가표준규정에 따라 표기해야 함		
	생산자, 수입업체 또는 현지 중개판매자 명칭/ 주소/연락처	• 수입 사전포장 식품은 원산지 국가명 또는 지역명, 중국 국가표준에 따라 등록된 대리업체, 수입업체 또는 중개 판매자의 명칭, 주소 및 연락처를 표시해야함(수입 사전포장 식품은 생산자 정보 필수 아님)		
		• 위탁 가공의 경우 위탁 의뢰 업체와 위탁업체의 명칭과 주소를 표시해야 함		
	글자 크기	• 1.8mm이상(60cm ² 이상 면적 기준)으로 표기해야 함		
		• 상표를 제외한 외국어는 한자보다 작아야 함		
	보관방법	• 사전포장 식품 라벨은 보관방법을 표시해야 함		
		• ‘보관방법’, ‘저장 조건’, ‘저장 방법’등의 타이틀로 표시하거나 타이틀 없이 표시할 수 있음		
	원산지	• 원산지 국가명 또는 지역명을 표기할 것		
	식품 생산허가증 일련번호	• 사전포장 식품 라벨은 식품생산허가증 일련번호를 표시해야 함		

라벨 표기사항 (가이드)	영양라벨	• 열량, 단백질, 지방, 포화 지방(혹은 포화 지방산), 탄수화물, 당, 나트륨, 영양소가 기준치(NRV)에 차지한 %비율(1자리 반올림) 필수 표기 • 소비자에게 제공하는 가장 작은 포장단위에 표기 • 각종 비타민, 엽산, 아연, 칼륨, 마그네슘, 칼슘, 철분, 망간, 불소 등 기타 성분사항은 선택 표기사항
	알레르기 유발물질	• 알레르기 유발물질은 배합원료를 사용할 때 배합원료표에 이해하기 쉬운 명칭을 쓰거나 배합원료표 부근에 추가 설명을 덧붙일 것 • 글루텐 함유 곡물 및 해당 제품(밀, 호밀, 보리, 귀리, 스펀트밀 또는 교배종 계열), 갑각류 동물 및 갑각류 동물 제품, 어류 및 어류 제품, 계란류 및 계란류 제품, 땅콩 및 땅콩 제품, 대두 및 대두 제품, 우유 및 우유제품(유당 포함), 견과류 및 씨앗류 제품
	로트 번호	• 필요에 따라 제품 로트 번호를 표시할 것
	섭취방법	• 필요에 따라 용기 개봉 방법, 섭취 방법, 조리 방법, 물 붓고 제조하는 방법 등 도움말을 표시할 것

* 자료 : 중국 시장감독관리총국, GB 7718-2011 사전포장식품 라벨 통칙, GB 28050-2011 포장식품영양라벨통칙, 식품안전정보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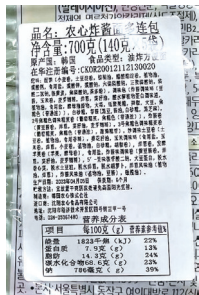
• 수입 식품에 별도 규정된 품목별 식품 라벨 표기 기준

냉장, 냉동 육류 제품	- 내외포장의 눈에 띄는 곳에 중문 혹은 영문, 수출국 언어로 원산지, 상품명, 생산일자, 생산업체 등록번호, 제조날짜 표기 필요 - 외포장에는 중문으로 규격, 원산지(주/성/시까지 구체적 명시), 목적지(중국), 생산일자, 보관 온도 등 내용 표기 필요 - 수출국의 공식 검역,검사 라벨 부착 필요
수입 건강식품, 특수 식품	- 중국어 라벨은 최소판매포장 위에 인쇄되어야 하며, 따로 중문 라벨을 인쇄해서 부착하면 안됨 - 보건식품(한국의 건강기능식품 개념)의 건강기능(효능)은 「건강기능표시를 허용하는 건강기능 목록」의 사항만 제품에 표시가능

* 자료 : 중국 해관총서, 수출입식품 안전관리방법(2022년 1월 1일 시행)

● 짜장라면

라벨링 사진



표기항목	표기내용		
명칭	농심 짜파게티		
내용량	700g(140g 5입)		
생산일자	2023년 4월 5일		
유통기한	생산 일자로부터 6개월		
보존방법	직사광선을 피하고 서늘하고 건조한 곳에 보관		
제조사	한국 농심 주식회사		
제조지(원산지)	한국		
원재료명	면(소맥분, 감자전분, 팜유 외 12가지), 스프류(짜장베이스 된장, 옥수수분말, 말도덱스트린 외 16가지), 추가재료(볶음조미감자분부터 올리브유까지 15가지)		
영양성분표	항목	100g당(g)	영양소 참고치%
	열량	1823kJ	22%
	단백질	7.9g	13%
	지방	14.3g	24%
	탄수화물	68.6g	23%
	나트륨	786g	39%

• 치킨파우더

라벨링 사진



표기항목	표기내용		
명칭	바삭한 치킨파우더		
내용량	500g		
제품 유형	비옥석 복합 조미료		
원재료	밀가루, 식용 전분, 향신료		
보관방법	서늘하고 건조하며 통풍이 잘되는 곳에 보관		
유통기한	생산일자로부터 18개월		
제조사	장쑤 지더리식품 유한회사		
제조지	중국		
영양성분표	항목	100g당	영양소 참고치%
	열량	1,495kJ	18%
	단백질	12.6g	21%
	지방	1.3g	2%
	탄수화물	72.5g	24%
	나트륨	346mg	17%

인증

[필수 인증]

• GACC 인증

- 중국으로 식품을 수출하려면 중국 해관총서(GACC)에 해외생산업체 등록을 진행해야 함.
업체는 GACC 등록번호를 받은 후 수입식품의 중국어 라벨에 GACC 등록번호를 인쇄해야 함.
2022년부터 해외생산업체의 GACC 등록번호가 18자리 수로 변경됨
- 모든 식품 품목이 적용 대상이나 18가지 식품 유형에 대해서는 수출국 정부가 해당 업체를 추천해 등록하는 방식으로 진행됨
 - * 추천등록 18가지 식품 유형: ① 육류 및 육류 제품, ② 케이싱, ③ 수산물, ④ 유제품, ⑤ 제비집 및 제비집 제품, ⑥ 벌꿀, ⑦ 계란 및 계란 가공품, ⑧ 식용유지 및 유지 원료, ⑨ 소(豕) 함유 밀가루 음식, ⑩ 식용 곡물, ⑪ 보건식품(건강기능식품), ⑫ 신선 및 탈수 채소, 건조 대두, ⑬ 조미료, ⑭ 견과 및 씨앗류, ⑮ 건조 과일, ⑯ 로스팅을 하지 않은 원두 및 코코아, ⑰ 특수선식식품, ⑱ 곡물 제분 공업 제품 및 맥아

인증명	GACC 등록	
발행 및 검사기관	중화인민공화국 해관총서	
강제 유무	필수	
제출 서류	중국 수출기업 등록 신청서, 신분 증명 서류(사업자등록증 등), 기업이 GACC 등록 규정의 요구에 맞는다는 기업의 성명	
비용	무료	
소요기간	약 7일(신청 품목에 따라 상이)	
유효기간	5년(6개월 전 갱신 신청)	

[선택 인증]

• 유기산제품인증(ORGANIC)

- 유기농제품의 품질을 향상하고 안전관리를 강화하고자 유기제품의 생산 및 가공에 대해 심사함. 유기 원료를 95% 이상 함유한 가공제품(물과 소금제외)의 경우 인증을 취득하여 '유기 (Organic)'를 라벨 또는 제품 포장에 기재하거나 마크를 부착할 수 있음

인증명	중국 유기제품인증(ORGANIC)	
발행 및 검사기관	중국품질인증센터(CQC) 중국인증인가관리감독위원회(CNCA)	
강제 유무	권장	
제출 서류	신청서, 기본 농장조사, 비즈니스 자격 문서, 관리시스템 문서, 환경 모니터링 보고서, 생산계획 등	
비용	품목당 2만 위안 이상(인증기관에 따라 비용 상이)	
소요기간	최소 4~6개월	
유효기간	1년	

• 신식품원료허가

-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에 따라 새로운 식품 원료를 사용하여 식품을 생산하거나 새로운 종류의 식품첨가물 또는 새로운 종류의 식품 관련 제품을 생산하는 경우 해당 제품의 안전성 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국가 보건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에만 판매될 수 있음. 신식품원료는 식품 원재료로써 특성을 가져야 하며, 중국에서 요구하는 영양·건강·안전성 측면에서 일정 기준을 충족해야 함

인증명	중국 신 원료 등록	-
발행 및 검사기관	중화인민공화국 국가위생건강위원회(NHFPIC)	
강제 유무	선택	
적용 품목	동물, 식물 및 미생물; 동물, 식물 및 미생물로부터 분리된 성분; 기존 구조가 변경된 식품 성분; 그 밖에도 새롭게 개발된 식품 원재료	
제출 서류	신청서, 신규 식품 원료 연구개발 보고서, 안전성 평가 보고서, 생산기술 등	
절차	등록 신청 → 서류 심사 → 평가 통과 → 최종 결정	

3. 통관거부사례 현황

3개년 한국산 통관거부 건수 비교

-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중국의 한국산 통관거부 건수는 총 243건으로 집계됨. 2023년 한국산 통관거부 사례 수는 전년 대비 약 45% 증가함. 사유별로는 2021년도부터 2023년까지 성분 부적합으로 인한 문제사례 수가 가장 많았으나, 2023년 하반기 유통기한 초과로 인한 불합격 문제사례가 25건 발생함

2021~2023년 3개년 한국산 통관거부 건수

사유	2021년	2022년	2023년	합계
라벨링/포장	23	18	11	52
성분 부적합	30	19	23	72
위생	21	7	12	40
서류미비	17	14	5	36
잔류농약 검출	0	0	0	0
기타	5	2	36	43
합계	96	60	87	243

2023년 월별 통관거부 건수

- 2023년 중국에서 발생한 한국산 통관거부는 총 87건으로 성분 부적합이 23건, 위생 12건, 라벨링/포장 11건, 서류미비 5건, 기타 36건이 집계되었음. 기타 사유로는 검역 승인을 얻지 못한 사례가 11건, 유통기한 초과로 인한 불합격 문제사례가 25건으로 확인됨

2023년 월별 한국산 통관거부 사례 건수

사유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라벨링/포장	1	3	0	0	0	2	1	0	2	0	2	0	11
성분 부적합	0	2	1	3	1	1	0	8	1	0	6	0	23
위생	2	3	0	0	4	0	0	2	1	0	0	0	12
서류미비	0	1	0	0	0	1	0	0	3	0	0	0	5
잔류농약 검출	0	0	0	0	0	0	0	0	0	0	0	0	0
기타	0	7	0	0	0	2	1	12	14	0	0	0	36
합계	3	16	1	3	5	6	2	22	21	0	8	0	87

● 통관거부 세부 사유별 건수

사유	세부내용	건수
성분 부적합	검역허가 안되는 성분 검출	6
	식품첨가물 사용량 초과	4
	치자황색소, 홍화황색 색소 사용 범위 초과	1
	영양 강화제 글루콘산아연, 비타민D, 철 사용범위 초과	5
	수분 기준치 초과	1
	승인되지 않은 동물성 원료 함유	5
	사카린나트륨 기준치 초과	1
라벨링/포장	라벨 불합격	11
위생	균락총수 기준치 초과	6
	곰팡이수 기준치 초과	4
	이물질 발견	1
	기생충 검출	1
서류미비	인증서류 미비	5
기타	검역 승인을 얻지 못함	11
	유통기한 초과	25
합계		87

● 통관거부 품목

대분류	품목명	건수	비중(%)	주요 문제사유
농산물	음료	21	24.1	첨가물 사용량 초과
	과자류	16	18.4	첨가물 사용량 초과
	면류	14	16.1	검역 허가 받지 않는 물질 검출
	기타조제 농산품	12	13.8	곰팡이 기준치 초과
	과실류	3	3.4	첨가물 사용량 초과
	당류	1	1.1	사카린 기준치 초과
	서류	1	1.1	검역 승인 받지 못함
소 계		68	78.2	
축산물	포유 가축 육류	7	8.1	검역 승인 받지 못함
	낙농품	1	1.1	영양강화제 사용량 초과
소 계		8	9.2	
수산물	어류	2	2.3	이물질 발견
	연체동물	2	2.3	검역 승인 받지 못함
	해초류	7	8.0	균락총수 기준치 초과
소 계		11	12.6	
총 합 계		87	100.0	

No.	제목	중국으로 식품 수출 시 해외 제조 업체 등록 및 고유번호 표시 필수	해당국가	중국
1			관련품목	식품전반
			유형*	TBT
주요 내용	•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중화인민공화국 수출입식품안전관리방법》에 따르면, 중국에 수입되는 모든 식품의 생산, 가공, 보관 기업은 중국 해관 시스템 등록을 통해 고유번호를 발급받아야 하며, 5년간 제품 포장지 등에 이를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함 • 등록 방식은 기업이 직접 등록을 신청하는 방법과, 국외생산업체가 소재한 국가(지역)의 관리기관이 등록을 추천하는 방식의 두 가지로 나뉨 * 소재국 관리기관의 추천으로 등록해야 하는 식품 : ① 육류 및 육류 제품, ② 케이스, ③ 수산물, ④ 유제품, ⑤ 제비집 및 제비집 제품, ⑥ 벌꿀, ⑦ 계란 및 계란 가공품, ⑧ 식용유지 및 유지 원료, ⑨ 소(猪) 함유 밀가루 음식, ⑩ 식용 곡물, ⑪ 보건식품(건강기능식품), ⑫ 신선 및 탈수 채소, 건조 대두, ⑬ 조미료, ⑭ 견과 및 씨앗류, ⑮ 건조 과일, ⑯ 로스팅을 하지 않은 원두 및 코코아, ⑰ 특수선식식품, ⑱ 곡물 제분 공업 제품 및 맥아 ※ 관련 법령 • (248호령 제4조) 수입식품 해외생산기업은 해관총서에 등록을 진행하여야 함 • (해관총서 시행령 248호 제15조) 등록이 된 업체가 對중국 식품 수출 시, 식품의 내·외 포장에 중국등록번호 또는 소재 국가(지역) 주관 당국에서 허가받은 등록번호를 표기해야 함			
애로·건의 사항	• 식품 수출을 위해서 중국 해관총서(GACC, General Administration of Customs of People's Republic of China)에 제조 기업 등록이 필요함			
기타	※ 중국 해관총서 시행령(제248호) http://www.customs.gov.cn/customs/302249/302266/302267/3625372/index.html			

No.	제목	젤리류 치자황색소 사용기준	해당국가	중국
2			관련품목	젤리류
			유형*	SPS
주요 내용		• 한국은 치자황색소의 사용이 허가된 품목에 대해 모두 일반사용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나, 중국은 품목별로 최대 사용기준을 규정하고 있음 • 중국의 치자황색소 사용기준은 식품안전국가표준 식품첨가물(GB 2760-2014)을 따름 [주요 내용] - 식품첨가물명 : 치자황색소(Gardenia Yellow) - 용도 : 착색료 - 사용기준 : 젤리에 대해 최대 0.3g/kg 사용 가능 * 젤리 분말에 사용할 경우 용해 배수에 따라 사용량 증가 • 한국은 본 품목과 관련하여, 캔디류에 대해 일반사용기준을 준수하여 치자황색소를 첨가할 수 있도록 허용함		
애로·건의 사항		• 중국 법규상 젤리 제품에 치자황색소의 최대첨가량이 타 국가들과 기준이 달라 중국 전용 제품으로 제품 설계 필요		
기타		※ 중국 식품첨가물 및 유해물질 DB https://www.kati.net/additive.additiveList.do		

No.	제목	비타민B2가 착색료로 분류되어 음용 식초의 원료로 사용기준 준수 필요	해당국가	중국												
3			관련품목	음용 식초												
			유형*	SPS												
주요 내용	- 식품에 사용되는 비타민B2(리보플라빈)은 ‘식품첨가물’ 또는 ‘영양강화제’로서 사용이 가능하며, 중국 식품안전국가표준 기준에 따라 기능별 허용품목에 대한 사용기준을 준수해야 함 - 비타민B2(리보플라빈)은 중국 식품안전국가표준 식품첨가물(GB 2760) 및 영양강화제(GB 14880) 기준을 따르며, 영양강화제로 사용되는 경우 식품의 색상, 맛, 냄새, 조리특성 등 제품의 일반적인 특성을 변질시켜서는 안됨 - 음용 식초의 경우 비타민B2(리보플라빈)은 식품첨가물(착색료)로 분류되어 식품첨가물(GB 2760) 사용기준을 따라야 함 [주요 내용] - 리보플라빈(riboflavin, 비타민 B2)의 용도 : 착색료 - 허용된 품목별 사용 범위 <table><tr><th>식품 분류 번호</th><th>식품명</th><th>최대사용량(g/kg)</th></tr><tr><td>04.02.02.02</td><td>건조 채소(탈수 감자에 한함)</td><td>0.3</td></tr><tr><td>06.07</td><td>인스턴트 쌀 및 밀가루 제품</td><td>0.05</td></tr><tr><td>12.10.01</td><td>고체 복합조미료</td><td>0.05</td></tr></table> - 한국의 경우 비타민B2는 기타농산가공품류, 기타가공품, 기타음료, 식초 등 분류될 수 있는 모든 품목에 ‘일반사용기준’을 준수하여 사용 가능함				식품 분류 번호	식품명	최대사용량(g/kg)	04.02.02.02	건조 채소(탈수 감자에 한함)	0.3	06.07	인스턴트 쌀 및 밀가루 제품	0.05	12.10.01	고체 복합조미료	0.05
	식품 분류 번호	식품명	최대사용량(g/kg)													
	04.02.02.02	건조 채소(탈수 감자에 한함)	0.3													
06.07	인스턴트 쌀 및 밀가루 제품	0.05														
12.10.01	고체 복합조미료	0.05														
애로·건의 사항	음용 식초 제품에 원료로 사용되는 비타민B2(리보플라빈)은 국내에서 영양강화제로서 일반 사용기준을 준수하여 사용 가능하나, 중국 수출 시 비타민B2(리보플라빈)은 식품첨가물 착색료로 분류되어 사용기준을 따라야 함에 따라 수출 시 어려움을 겪은 바 있음															
기타	한국에서는 비타민 B2의 주용도를 영양강화제로 규정하고 있으나, 주용도 이외에 국제적으로 다른 용도로서 기술적 효과가 입증되어 사용의 정당성이 인정되는 경우, 해당 용도로 사용할 수 있음															

05

현지화 자문보고서

1. 찹쌀떡

수출업체 조사 의뢰사항

- 중국 수입 가능여부 검토

조사 결과

- 즉시 수입 가능 여부 : 가능
- 중국 상표 등록 여부 : 등록 필요
 - 중국 온라인몰 입점 시 중국 상표등록증이 요구됨(T-mall, 징둥 등) 중문라벨에 상표가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되고, 해당 제품명으로 수입신고를 진행한 후 수입 면장을 함께 제출해야 최종 입점 브랜드로 인정받을 수 있음
 - aT현지화 지원사업 상표출원지원 사업 이용 가능
- 품목 분류 및 관세
 - 2022년 기준 APTA 세율이 8.6%로 가장 낮으며 'APTA원산지 증명서' 제공 시 특혜 세율 적용 가능
 - 단, APTA원산지 발급 요건 충족 여부는 별도 확인 필요

HS CODE	품목 해설	관세율			
		MFN	FTA	APTA	RCEP
19059000.00	1905 - 빵 · 파이 · 케이크 · 비스킷과 그 밖의 베이커리 제품 (코코아를 함유하였는지에 상관없다), 성찬용 웨이퍼 · 제약용에 적합한 빈 캡슐 · 실링웨이퍼(sealing wafer) · 라이스페이퍼(rice paper)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물품 1905.90 - 기타	10%	11%	8.6%	-

● 권고사항

- 본 제품은 중국 식품안전법 등 관련 기준에 따라 심의를 진행한 결과 즉시 수입 가능

● 성분 심의 기준

- 식품 유형 : 제과류(糕点)

* (식품첨가물) 식품안전국가표준 GB 2760-2014, (영양강화제) 식품안전국가표준 GB 14880-2012, (기타 원료) 국가표준 및 일반식품 사용 관련 규정 참조

● 성분 검토 의견 : 모든 성분 첨가 가능

● 포장 검토 심의 기준

* 식품안전국가표준 GB7718-2011 사전포장식품 라벨통칙

* 식품안전국가표준 GB28050-2011 사전포장식품 영양라벨통칙

* 기타 참고 기준 : 중국 식품안전법 및 기타 관련 규정

● 포장 검토 의견

- 한글 라벨에 영양성분표가 없으므로 라벨링 진행시 영양성분표 혹은 영양성분 시험성적서 제공
- 2022년부터 중국 해관 수입 신고시 GTIN번호를 신고하여야 하므로 외포장에 바코드 추가 권고

중문 라벨 기재 항목

구분	내용
필수 기재 내용 (공통) * 식품안전국가표준 GB7718-2011 예포장 식품라벨통칙	제품명, 제품유형, 성분표, 제품의 중량 및 규격, 생산일자 및 유통기한, 수입자 혹은 유통상 정보, 영양성분표, 보관방법
추가 기재 내용 (공통)	[중문표기] 생산기업등록번호(CHINA REG.NO) 혹은 소재국가(지역)등록번호(OVERSEAS REG.NO)
추가 기재 내용 (영양성분표)	[식품안전 국가표준 예포장식품 영양라벨 통칙개정] 〈GB 28050-2011 에 따른 표기항목〉 - 열량, 핵심 영양소(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나트륨), 영양소 참고수치(NRV)의 %비율 〈GB 28050 의견 수렴안* 에 따른 표기항목〉 * 2021.9.26 발표된 개정 표준에 대한 의견 수렴안 - 열량, 단백질, 지방, 포화 지방(혹은 포화 지방산), 탄수화물, 당, 나트륨, 영양소 참고수치(NRV)의 %비율 - 儿童青少年谨慎选择高盐、高脂、高糖食品。 * 아동청소년은 고염,고지방,고당식품을 신중하게 선택하세요.
추가 기재 내용 (인삼 제품)	[중문표기] 섭취 제한량 3g/1일, 임산부 및 수유기 여성과 14세 이하 어린이 식용 부적합

자문 결론

- 본 보고서 작성 당시와 실 수출 시 규정에 변화가 있을 수 있어 수출 전 혹은 자문 완료 후 6개월이 초과될 경우, 규정 변화 여부 확인을 위해 재문의를 권고함

2. 홍삼정 2종

수출업체 조사 의뢰사항

- 중국 수입가능여부 검토

조사 결과

- 즉시 수입 가능 여부 : 1번 품목 가능 / 2번 품목 불가
- 불가 사유 : 첨가 불가 성분 및 외포장 문구 수정 권고
- 중국 상표 등록 여부 : 등록 필요
 - 중국 온라인몰 입점 시 중국 상표등록증이 요구됨(T-mall, 징둥 등) 중문라벨에 상표가 제품명의 일부로 사용되고, 해당 제품명으로 수입신고를 진행한 후 수입 면장을 함께 제출해야 최종 입점 브랜드로 인정받을 수 있음
 - aT현지화 지원사업 상표출원지원 사업 이용 가능
- 품목 분류 및 관세
 - 2022년 기준 APTA 세율이 11%로 가장 낮으며 'APTA원산지 증명서' 제공 시 특혜 세율 적용 가능
 - 단, APTA원산지 발급 요건 충족 여부는 별도 확인 필요

HS CODE	품목 해설	관세율			
		MFN	FTA	APTA	RCEP
21069090.90	2106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 2106.90 - 기타	12%	18.4%	11%	20%

- 성분 심의 기준
 - 식품 유형 : 음료(饮料) -- 식물음료(植物饮料)
 - * (식품첨가물) 식품안전국가표준 GB 2760-2014,(영양강화제) 식품안전국가표준 GB 14880-2012,(기타 원료) 국가표준 및 일반식품 사용 관련 규정 참조

● 성분 검토 의견

- 첨가 불가 성분 있음
- 중국 위생부 2012년 제17호 공고에 따라 5년근 및 5년근 이하 인공 재배한 인삼의 뿌리와 줄기만 일반식품으로 사용이 가능하며, 6년근 인삼은 보건식품 원료에 해당하는 품목은 일반식품에 첨가 불가

● 포장 검토 심의 기준

- * 식품안전국가표준 GB 7718-2011 사전포장식품 라벨통칙
- * 식품안전국가표준 GB 28050-2011 사전포장식품 영양라벨통칙
- * 기타 참고 기준 : 중국 식품안전법 및 기타 관련 규정

● 포장 검토 결과

- 본 제품은 일반식품 관련 규정에 따라 외포장에 첨가 불가 성분이 있으므로 삭제 권고
- 치료, 효능 암시 문구 삭제 권고
 - * 중국 식품안전 국가표준 예포장식품 라벨통칙(GB7718-2011) 제3.6조 : 질병의 예방, 치료 효과가 있는 내용을 명시하거나 암시해서는 안되며 보건식품이 아닌 경우 건강 유지 및 보장 기능을 명시하거나 암시해서는 안됨
- “6년근” 문구 삭제 권고
 - * 중국 위생부 2012년 제17호 공고에 따라 5년근 및 5년근 이하 인공 재배한 인삼의 뿌리와 줄기만 일반식품으로 사용 가능함
- “건강기능식품”, “기능”관련 문안의 삭제 혹은 증문라벨에 “본 제품의 외포장에 기재된 인증 관련 광고 문구는 해외에서 획득한 것으로 중국 시장 유통시 적용되지 않으며, 모든 내용은 증문라벨을 기준으로 함” 표기 권고

자문 결론

- 본 보고서 작성 당시와 실 수출 시 규정에 변화가 있을 수 있어 수출 전 혹은 자문 완료 후 6개월이 초과될 경우, 규정 변화 여부 확인을 위해 재문의를 권고함

3. 음료 3종

수출업체 조사 의뢰사항

- 중국 수입가능여부 검토

조사 결과

- 즉시 수입 가능 여부 : 두 개 품목 불가, 한 개 품목은 성분 상세 확인 필요
- 불가 사유 : 첨가 불가 성분
- 품목 분류 및 관세
 - 2022년 기준 APTA 세율이 11%로 가장 낮으며 'APTA원산지 증명서' 제공 시 특혜 세율 적용 가능
 - 단, APTA원산지 발급 요건 충족 여부는 별도 확인 필요

HS CODE	품목 해설	관세율			
		MFN	FTA	APTA	RCEP
21069090.90	2106 -따로 분류되지 않은 조제 식료품 2106.90 - 기타	12%	18.4%	11%	20%

- 성분 심의 기준
 - 식품 유형 : 음료(饮料)
 - * (식품첨가제) 식품안전국가표준 GB 2760-2014,(영양강화제) 식품안전국가표준 GB 14880-2012,(기타 원료) 국가표준 및 일반식품 사용 관련 규정 참조
- 성분 검토 의견 : 첨가 불가 성분 있음
 - L-아르기닌은 일반식품 원재료로 사용 불가함
 - 마카추출농축분말은 사용이 불가하며 마카분말은 사용 가능함
 - 글루콘산아연과 타우린의 사용 가능 범위는 각각 0.0418%~0.125%, 0.11~0.15%이므로 조정 필요
 - 식용색소황색제5호는 해당 색소가 포함된 품목에 사용이 불가함

자문 결론

- 본 보고서 작성 당시와 실 수출 시 규정에 변화가 있을 수 있어 수출 전 혹은 자문 완료 후 6개월이 초과될 경우, 규정 변화 여부 확인을 위해 재문의를 권고함